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629-82-00239
③ 대표자 성명	전일재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dokdo1961@naver.com	⑥ 사업연도	2020년도
⑦ 전화번호	010-6666-7005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2019-06-28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7-14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63,980	8월	859,543	1,154,735	67,106
1월	6,000,096	2,971,890	3,892,186	9월	470,006	537,110	2
2월	4,951,092	4,374,069	4,469,209	10월	230,000	130,000	100,002
3월	2,206,061	4,004,450	2,670,820	11월	2,319,339	2,000,870	418,471
4월	4,310,144	4,910,840	2,064,124	12월	555,039	888,660	84,850
5월	3,020,148	2,937,740	2,146,532	합계	50,071,870	50,851,000	
6월	20,530,270	18,289,600	4,387,202	차기이월	-	-	84,850
7월	4,620,132	8,645,036	362,29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1.28.	일본 도쿄 독도전시관 폐관축구 성명서 발표	1		200,000
3.24.	일본 국경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폐축구 행사	1		200,000
5.19.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반박성명문 발표	1		300,000
6.18.~6.19.	독도 수호결의대회 및 독도탐방	1		13,347,910
7.15.	일본 방취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폐축구행사	1		200,000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2020년	대구 방진복 기부(2020-03-04)	100명	대구시청	200,000
	독도관리사무소 마스크후원 (2020-04-01~2020.04.30.)	100명	독도관리사무소	1,108,900
합 계				

4. 기부금 시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제출인: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2020. 1. 1. ~ 2020.12. 31.
① 법인(단체)명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629-82-00239
③ 대표자 성명	전일재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2019-06-28 만료일 :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7-14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ddsr.or.kr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⑪ 점검결과
⑦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여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여	
	다-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여	
⑧	디 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여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여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여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여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여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제출인 :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통부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비목까지(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3. ⑦의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 다만, ⑦의 검토 항목 중 '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익법인등도 해당됩니다(실제운영상 수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4. ⑥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바목(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
5. ⑩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⑪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